부 패 방 지 방 침

삼호개발주식회사
제정일 2022.07.22.

삼호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윤리적인 기업시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패행위 방지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이에 부패방지방침을 공표하고 모든 임직원의 실천 및 준수를 다짐한다.

1.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2. 임직원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뇌물방지 규정을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의 부패방지법규를 준수한다.
3. 임직원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 및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5. 임직원은 업무 중 부패방지 관련 법규 위반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회사는 적절한 부패신고절차를 마련한다.
6. 회사는 부패행위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회사는 부패행위 제보가 회사의 유·무형적 이익 또는 손실 방지를 가져온 경우 제보자에 대해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